

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됩니다

- 1. 농지(논·밭·과수원), 산림(임야) 훼손
  - ☑ 공사용 컨테이너, 자재 등 각종 물건 적치
  - ☑ 주차장으로 사용
  - ☑ 도로를 개설
  - ☑ 임야를 농지로 사용
  - ☑ 나무를 벌목

### 2. 농사용 창고를 다른 용도로 이용

- ☑ 주거 목적의 설비시설을 설치
- ☑ 음식점, 휴게점 등 영업행위
- ☑ 물류창고로 이용



### 3.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영농행위 외 목적으로 사용

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

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며,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에 한정됩니다.

- ☑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
- ☑ 토지의 형질변경
- ☑ 공작물의 설치
- ☑ 축목의 벌채
- ☑ 토지의 분할
- ☑ 물건의 적치

## 불법행위시 처벌

- ▶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
- ▶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2회 반복하여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
- ▶ 상습·고의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(송치)되며,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합니다

##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, 농업용 비닐하우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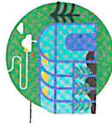
관련 유의사항 안내

“농막과 농업용 비닐하우스”는 절대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



### 1. 농막

- ☑ 설치하기 전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
- ☑ 연면적 20㎡ 이하의 범위 내에서 1개의 농막 설치 가능합니다



### 2. 농업용 비닐하우스

- 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
- ☑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재·철재·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
- ☑ 탈의실 또는 농기구 보관실, 난방용 기계실,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㎡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

우리 구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도시과로 문의하세요



북구청 도시과

052) 241-7903~7904



울산광역시북구  
www.bukgu.ulsan.kr

울산광역시북구  
www.bukgu.ulsan.kr



새희망미래도시, 영풍북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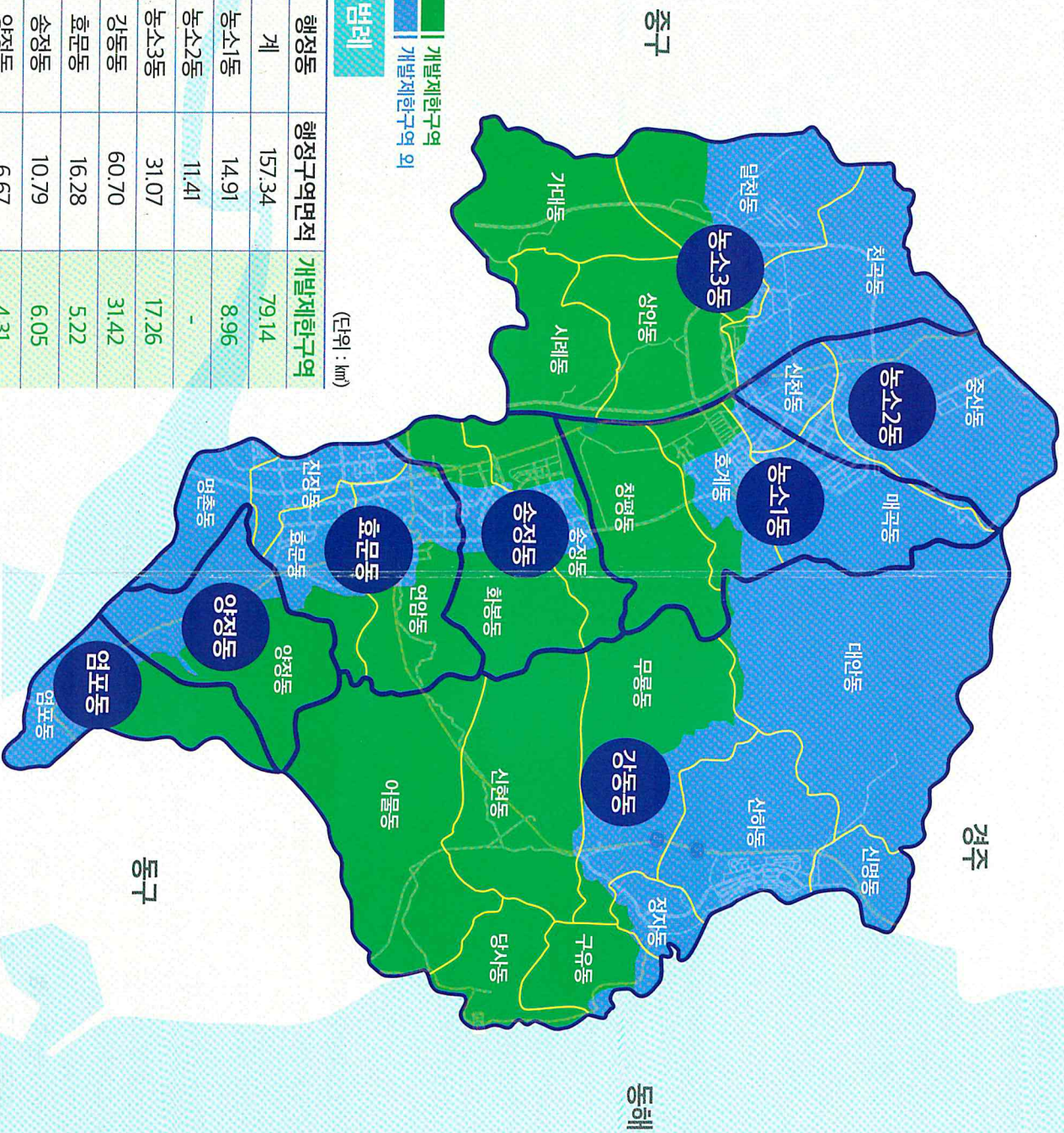
한눈으로 보는

#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

|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



# 울산 북구 개발제한구역 현황도



(단위 : km<sup>2</sup>)

※우리 구 개발제한구역을 한눈에 보기 쉽게 작성한 현황도이며 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는 토지이용계획(<http://www.eum.go.kr>)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

- ☑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·밭을 갈거나 50cm 이하로 절토 (1년단위)
- ☑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cm 미만으로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성토(1년단위)
- ☑ 체소·연초·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
- ☑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
- ☑ 10㎡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(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) 설치
- ☑ 나무를 베지 않고 나무를 심는 행위
- ☑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밭,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을 설치(그늘막 등의 공작물 설치는 아니 된다)

##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

- 1)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·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
  - ☑ 축사, 양어장, 사육장, 직물재배사, 육묘장, 온실 등
  - ☑ 창고, 관리용건축물, 농막 등
  - ☑ 주민 공동이용시설(마을집임로, 공동주차장, 공동작업장, 경로당, 복지회관 등)
- 2) 주택 신축
  - 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"대"인 토지
  - 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 (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)이 있는 토지
- 3) 토지의 형질변경(건축을 제외) 및 토지의 분할
  - ☑ 논을 밭으로,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
  - 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·밭·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
  - ☑ 지반의 붕괴 또는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·옹벽·사방시설 등의 설치
  - ☑ 죽목의 벌채(나무를 베는 행위)
  - ☑ 토지의 분할(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㎡ 이상)

